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655
----------	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6월 19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 이유

- 누수 감면 대상을 지하 및 벽체 내 누수로 한정함에 따라 조례 시행에 앞서 홍보기간을 둘 필요성이 있어 부칙의 시행일을 수정함.

2. 주요 골자

- 부칙의 시행일을 2020년 1월 1일부터로 함.

3. 참고 사항 : 생략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</p> <p>① ~ ② (생략)</p> <p>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른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④ (생략)</p>	<p>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</p> <p>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. 다만,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</u></p>	<p>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</p> <p>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. 다만,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.</p> <p>④ (개정안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부칙</p> <p><u>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 ① ~ ② (생 략) ③ 누수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의 사용요금은 별표 3에서 정하는 방법 을 따른다. <단서 신설></p> <p>④ (생 략)</p>	<p>제26조(사용요금의 징수결정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③ ----- ----- -----. <u>다만, 지하 및 벽체 내 누수 등의 사유에 한한다.</u>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